

축산업 패러다임 전환 친환경 필수 시대

환경 관련 각종 규제 강화로 대책 마련 시급
부속도 검사의무화, 분뇨 장비설치 의무화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축산업계도 외면할 수 없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축산 환경과 관련된 각종 규제가 신설되고 있어 축산농가들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선 지난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2015년 3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됐으나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3월 25일 시행됐지만 축산농가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이행진단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된 것이다. 오리농가의 경우 축사 특성상 분뇨와 깔짚을 활용해 충분히 부숙돼 반출되고 있어 타 축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지만 자칫 실수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축산 약취로 인해 갈수록 늘어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30개 지역에서 축산약취개선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개 지역에 이어 올해는 30개 지역으로 확대 추진된다.

최근에는 축산농가들은 축분처리 및 냄새저감 장비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축산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글싣는 순서

Part I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Part II 축산약취개선 사업 본격 추진

Part III 축분처리 및 냄새저감 장비 설치 의무화

part I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라 축사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농가는 퇴비부숙도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검사 대상농가는 전체 축산농가 11만4000가구 가운데 소규모 또는 전량 위탁처리 농가를 제외한 모든 축산농가들이 대상이다. 축사면적이 1500㎡(454평) 이상인 경우 퇴비부숙도 검사에서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를 받아야만 퇴비로 살포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소 100㎡ 이상 900㎡ 미만(30~272평), 돼지 50㎡ 이상 1,000㎡ 미만(15~302평), 가금 200㎡ 이상 3,000㎡ 미만(60~907평)이며, 허가 대상은 소 900㎡(272평), 돼지 1,000㎡(302평), 가금 3,000㎡(907평) 이상 규모의 농가다.

위반시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퇴비부숙도 검사를 받은 후 기준치에 미달해도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일일 300kg 미만의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소규모 농가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숙도 검사주기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농가의 경우 1년에 2회, 신고농가는 1년에 1회 검사를 받으면 된다.

다만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와 신고 규모 미만 배출시설이나 가축분뇨 발생량 1일 300kg 미만 농가(한우는 22두 이하)는 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퇴비부숙도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부숙된 퇴비를 잘 혼합한 후 약 500g 이상의 시료를 채취해 비닐봉지에 담고 퇴비 성분검사 위탁서를 작성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검사 받을 수 있다.

검사 결과서는 검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부숙도 육안판별 평가항목 및 방법

퇴비 부숙도 평가항목은 농가기록, 관능평가, 가점 항목으로 나뉜다. 평가점수가 40점 미만이면 미숙부숙초기, 40~59점이면 부숙중기, 60~80이면 부숙후기, 81점이상이면 부숙완료 평가를 받는다. 이 검사에서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의 평가를 받아야만 퇴비로 살포할 수 있다.

농가 기록 항목

정기항목	평가내용			
퇴비화 기간 (20점)	가축분자제	20일 이내(2점)	20일~6개월 미만 (3~11점)	6개월 이상(12~20점)
	축분+수분조절재	20일 이내(2점)	20일~3개월 미만 (3~11점)	3개월 이상(12~20점)
뒤집기횟수 (10점)	2회 이하(2점)	3~6회(3~6점)		7회 이상(7~10점)
* 퇴비화 기간 동안 뒤집기 횟수				
강제 통기 (10점)	통기 안함(2점)	통기상태 보통(3~6점)		통기상태 양호(7~10점)

관능 평가 항목

정기항목	평가내용		
색깔&형상 (20점)	축분과 유사한 색깔 및 형상(2점) 	축분과 퇴비의 중간 색깔 및 형상(3~11점) → 중간 색깔·형상 ←	갈색 또는 흑색을 띠고 축분 형상이 완전히 소멸(12~20점) 
냄새 (20점)	아주 강한 축분냄새를 느낄 정도(2점)	축분냄새를 알 수 있는 정도(3~11점)	축분냄새 완전 소멸 및 흙냄새 등 퇴비냄새(12~20점)
수분 (15점)	70% 이상(2점)  손으로 움켜쥐면 손가락 사이로 물기가 많이 나옴	60% 전후(3~9점)  손으로 움켜쥐면 손가락 사이로 물기가 약간 나옴	50% 전후(10~15점)  손으로 움켜쥐면 손가락 물기가 스미지 않음

가점항목 (발생시)

정기항목	평가내용		
부숙중 최고온도 (5점)	50°C 이하 (2점) 〈측정방법〉 ▶ 퇴비더미 내 중앙지점 온도 측정 ▶ 철봉온도계 등 활용	50~60°C 미만 (4점) 	60°C 이상 (5점) 
방산균여부 (5점)	없음(2점) 	보통(3~4점) → 중간 정도 ←	많음(5점)  

* 퇴비더미 내부(얇은 층)의 방선균 생성여부

part II

축산악취개선 사업 본격 추진

농식품부는 여름철을 대비해 지난해 10개 지역에 이어 전국 30개 지역의 취약 농가와 시설을 중심으로 축산악취개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1년 1분기 축산악취민원은 1,438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11.2% 감소했다. 관계기관 및 축산농가가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축산악취 개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악취개선이 시급한 취약농가·시설(99개소)을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진단을 실시, 분뇨처리 관리 및 악취저감시설 운영 미흡 등으로 축산악취가 우려되는 축산 밀집단지, 신도시 및 주요관광지 인근지역 등을 선정해 지자체 중심으로 악취개선활동을 추진해 나간다. 또한, 악취개선활동 지역별 성과측정 및 평가를 통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지난해 악취개선 사업 선정 10개소 악취민원

275건
(2020년 1분기)

38.1%
감소

170건
(2021년 1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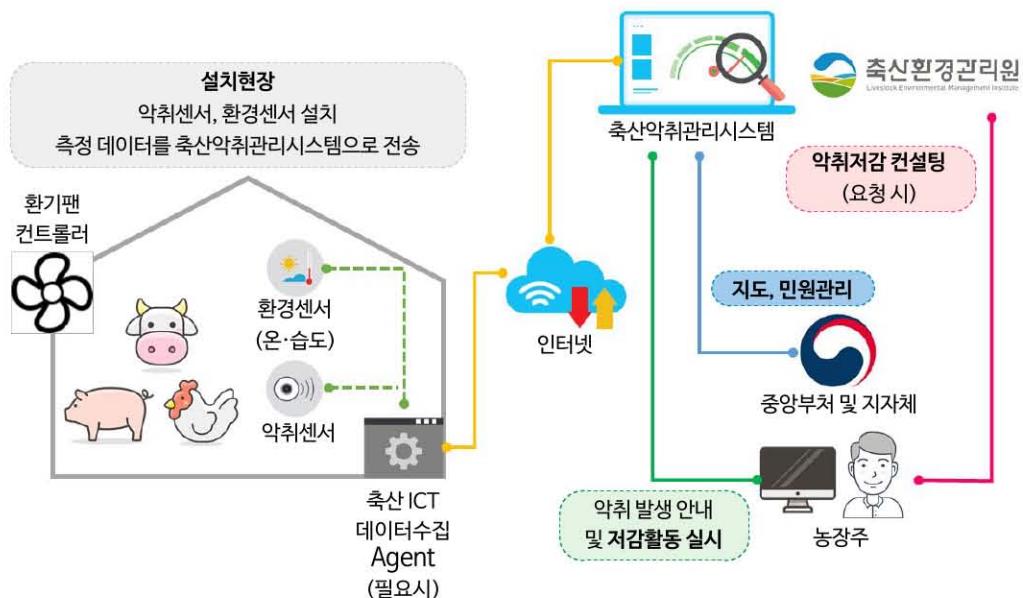


여름철 축산악취 개선 추진 계획

농가·시설별 실정에 맞는 악취개선계획 수립할 것

농식품부는 30개 지역(762개소)에 대한 현장진단 및 지역협의체 활동을 바탕으로 농가·시설별 자체 실정에 맞는 악취개선계획을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추진토록 했다. 상대적으로 악취가 심하고, 고령의 농장주 등 취약한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환경관리원의 컨설팅을 통해 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가의 이행률 제고를 위해 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과 함께 협동 현장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30개 지역 내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악취측정 ICT장비'를 설치('21년 219개소)하여 악취 전구물질인 암모니아가 관리기준을 초과할 시 해당 지자체 및 농가에 통보(SMS)하여 농가 및 시설의 저감 활동을 유도해 나가고, 필요 시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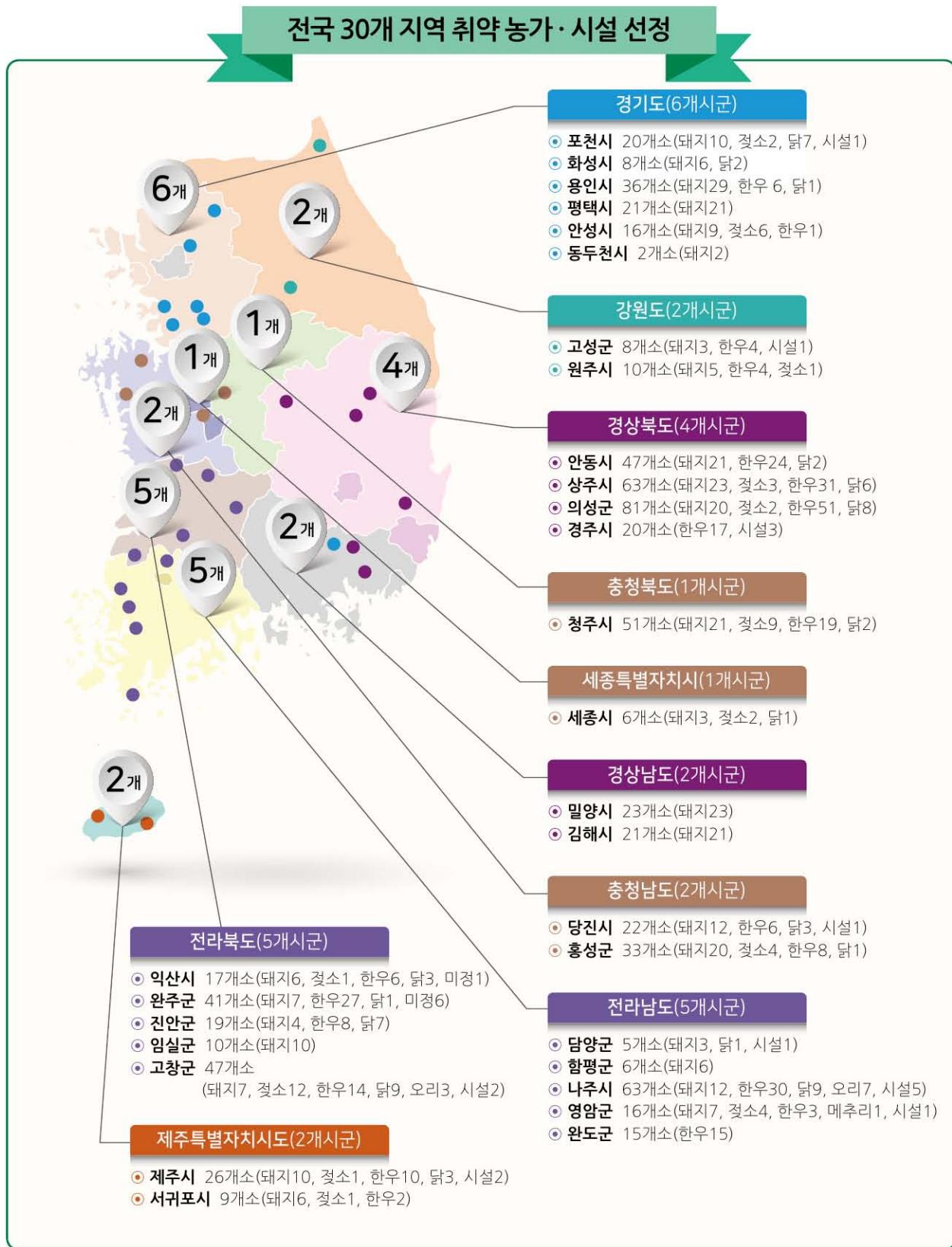


여름철 축산악취 개선 진행상황

30개 지역 모두 협의체 구성완료

농식품부는 축산환경관리원 및 전문가와 함께 지난 4월 동안 전국 30개 지역 내 악취개선이 시급한 취약농가·시설(99개소)을 대상으로 현장을 점검·진단한 결과, 축산농가의 주요 악취원인은 축사 내·외부 청결관리 미흡, 처리시설 개방과 분뇨 적체 등 분뇨처리의 관리 미흡 등이며, 공동자원화시설 등 위탁처리시설의 경우는 악취저감시설 미설치 및 처리시설·장비 운영관리 미흡 등으로 확인됐다.

현재 30개 지역 모두 협의체 구성을 완료한 상태로, 각 협의체는 환경개선 우수현장 방문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정기 간담회(월 1회)를 통해 악취개선활동 및 추진상황을 상시 공유하고 논의할 계획이다.



part III

축분처리 및 냄새저감 장비 설치 의무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가축분뇨처리 및 냄새저감 장비 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이번에 통과된 축산법은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에 가축분뇨처리 및 냄새저감 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의 준수사항으로 가축분뇨처리 및 냄새저감의 의무를 두어 가축분뇨처리 및 냄새저감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축산법 일부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축산업 허가'에 대한 축산법 제22조 제2항 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장비 등을 갖출 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장비,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출 것'으로 바뀌었다.

축산법 제22조 제4항 제3호 중 축산업 등록에 대한 내용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장비 등을 갖출 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장비,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출 것'으로 변경된다.

또한, 제22조 제1항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항목에도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과 함께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내용이 삽입됐다.

윤준병 의원은 "현행법은 축산업의 허가 시 가축분뇨처리 및 냄새저감 장비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축산인들의 냄새 개선에 대한 의식 수준이 한 층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